본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확정된 법령안이 아니며,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하위법령[안] 설명회

일 시: 2020년 2월 12일(수요일) 14:00~16:00
장 소: 엘타워 골드홀

국토교통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안) 설명회

일시 : 2020. 2. 12. (수) 14:00~16:00

장소 : 엘타워 골드홀

국토교통부

1. 추진배경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 · 공포(법률 제16421호, ‘19.4.30)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20.5.1부터 시행

2.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주요내용

- (정의 세분화)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구분(부분 · 완전)하고, 자율주행협력시스템 · 정밀도로지도 등 정의 신설

- (정책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 정책 추진, 민간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5개년) 수립 및 현황조사 시행

-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여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인프라를 집중관리하여 품질 유지

- (생태계기반 조성)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2.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주요내용

▶▶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 · 의결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 지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지역

-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 · 화물운수사업, 도로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특례를 부여하여 新서비스 · 비즈니스모델 허용
-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 지정 · 변경 · 해제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설립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

3.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則 제2조, 제3조)

法 제2조(정의)

- (주요내용) ①「도로교통법」상 신호기·안전표지,「통합교통체계법」상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자율주행협력시스템"으로 정의
  ②「공간정보관리법」상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 위치정보를 포함한 전자적 지도를 "정밀도로지도"로 정의
- (위임사항) ①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세부 기능적 요소를 부령에 위임
  ② 정밀도로지도의 세부 기능적 요소를 부령에 위임

▶▶ **①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전자적 기록방식으로 자율주행차가 주변상황, 도로교통정보 등 인지·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통신 등)하는 시스템(則 제2조)**

▶▶ **②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3차원 전자적 공간정보 입체모형(則 제3조)**

3. 주요내용

기본계획의 수립(令 제2~3조)

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주요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지원정책, 인프라,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②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의견청취 필요
- (위임사항) 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항목을 대통령령에 위임
  ②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① (기본계획 포함사항)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 · 목표,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 · 관 협력방안, 시범운행지구 지정 · 운영 등(令 제2조 1항)**

▶▶ **② (계획의 수립·변경)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 변경 시 2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에게 통보(令 제2조 3항, 제3조)**

3. 주요내용

현황조사(令 제4조, 則 제4조)

法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위임사항) ① 현황조사의 방법 ·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②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

▶▶ **① (조사방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 산업 · 인프라 · 정책 등 현황조사 시 포함사항을 규정(令 제4조)**

***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계획**

▶▶ **② (조사결과 관리) 현황조사* 결과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 관리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則 제4조)**

***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 가능**

3. 주요내용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則 제5조)

法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 (주요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음
  ② 안전구간 지정 시 도로관리청, 지방경찰청장, 운전자 등에게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구간 확대 및 신뢰도확보를 위해 도로시설의 유지 · 보수 등의 조치를 도로관리청장.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 가능
- (위임사항) ① 안전구간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부령에 위임
  ② 주체별 안전구간의 통보.고지 방법은 부령에 위임
  ③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방안 등을 부령에 위임

▶▶ **① (지정 기준 · 절차) 안전구간 지정 시 도로구조* · 인프라(자율주행 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 ·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 차로 수, 차로의 폭, 차로 표시,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평면곡선의 길이 등**

- 도로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則 제5조 1~3항)

3. 주요내용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則 제5조)

▶▶ ② (조사결과 관리) 관계기관의 장, 운전자, 자율주행차 제작 · 조립 · 수입 · 관리자 등 주체별 지정사실 통보방법* 규정(則 제5조 4~6항)

- **관계기관(도로관리청, 지방경찰청 등)의 장 :** 서면통보
- **운전자 :** ① 시 · 종점에 도로표지 게시, ② 신호기 · 안전표지에 고지,
  ③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고지, ④ 지정사실이 담긴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 **자율주행차 제작 · 조립 · 수입 · 관리자 :** ①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②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
  ③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③ (구간확대 및 신뢰도확보 방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관계기관장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則 제5조 7~9항)

3. 주요내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令 제5조~제6조]

法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주요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행지구 위원회(法 제16조)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②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시 관보고시 및 시·도지사에 통보
- (위임사항) ①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항목
  ② 시범운행지구 지정 세부절차, 지정기간 등,
  ③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① (지정 신청방법) 시 · 도지사는 위치 · 면적,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운행안전성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과정 등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令 제5조 1항, 2항)**

3. 주요내용

▶▶ ② (지정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는 경우 운영계획서 보완, 위원회 심의 · 의결, 최종통지 과정을 통해 지정(令 제5조 3~5항)

* 90일 이내에 지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45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운영계획서 수정 · 보완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음)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함(令 제5조 6항)

▶▶ ③ (변경 · 해제) 시 · 도지사가 신청하거나, 특정사유*에 해당되면, 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해 지구의 변경 · 해제 가능(令 제6조)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3.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5.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6. 지정 이후 평가결과(法 제17조) 시범운행 추진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주요내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令 제7조)

法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 (주요내용) ① 시범운행지구 관할 지자체의 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旣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차관, 시·도지사, 도로관리청장, 지방경찰청장 등
- (위임사항) ①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 제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
  ② 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① (조례 제정 · 통보) 조례는 법률 · 운영계획서와 부합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조례 제 · 개정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令 제7조 1~2항)**

3. 주요내용

▶▶ ② (협의체 구성 · 운영)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차관, 시 · 도지사, 도로관리청, 지방경찰청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令 제7조 3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전문지식 ·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이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가 소집되며(令 제7조 4항),
  인접하는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는 협의체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令 제7조 6항)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시·도지사 신청	(운영계획서) ⇄ (지정통지)	위원회 심의·의결
2. 변경. 해제	시·도지사 요청 또는 특정사유 해당		
3. 운영. 관리	운영조례 제·개정	(조례통지) ⇄ (조치권고)	협의체 구성·운영 정기·수시 운영평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 관리 개요>

3. 주요내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令 제8조 則 제6조)

法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주요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가능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 가능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 노선 운행 등 운수사업 허용
- (위임사항) ①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허가를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부령에 위임
  ② 한정운수면허 발급을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부령에 위임

▶▶ **①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자는 여객운송계획서*, 보험가입 증서, 자동차등록증등**을 국토부에 제출(令 제8조 1항, 則 제6조 1항)**

*** 자율주행차 제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영역, 자율주행차의 대수(臺數), 운행구역 · 운임 등이 포함되어야 함(則 제6조 2항)**

****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안전기준 특례승인서(法 제11조)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사본 첨부 필요**

3. 주요내용

①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허가**)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허가의 갱신**을 신청 가능(令 제8조 2~3항)

▶▶ ② (**한정운수면허 발급**) **면허 발급 대상사업**과 **발급권자** 규정(令 제8조 4~5항)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 · 도지사는 면허 발급 사실을 상호 통보해야 함(令 제8조 7항)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 시내버스운송사업 ▪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마을버스운송사업

- 신청자는 **여객운송계획서*, 보험가입 증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令 제8조 6항, 則 제6조 3항)

* 자율주행차 제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영역, 자율주행차의 대수(臺數), 운행구역 · 운임,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則 제6조 4항)

3.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令 제9조, 則 제7조)

法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주요내용)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함
- (위임사항)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부령에 위임

▶▶ ① (**자율주행차 유상화물운송 허가**) 신청자는 **화물운송계획서***, **보험가입증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국토부에 제출(令 제9조 1항, 則 제7조 1항)

* 자율주행차 제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영역, 자율주행차의 대수(臺數), 운행구역·운임 등이 포함되어야 함(則 제7조 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허가의 갱신**을 신청 가능(令 제9조 2~3항)

3. 주요내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令 제10조, 則 제8조)

法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주요내용) 시범운행지구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특례를 받아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 (위임사항)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부령에 위임

▶▶ ① (안전기준 특례 승인) 신청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성능을 사전에 확인받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令 제10조 1항)

* 「자동차관리법」 제32조 3항에 따라 자동차 부품 · 장치를 인증하는 자

**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성능시험대행자 확인서 등 제출(則 제8조)

▶▶ ② (승인조건) 안전운행을 위해 붙이는 승인조건 규정(令 제10조 2항)

* ① 운행기록·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②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승인취소, ③ 교통사고 우려 등이 인정되면 운행을 일시 정지

3. 주요내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令 제11조, 則 제9조)

法 제13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자는 「도로법」에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음
- (위임사항) ①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②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유형은 부령에 위임

▶▶ **① (도로공사 등 허가) 신청자는 도로 공사(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유지 · 관리(도로계획평면도 등) 관련 서류를 도로관리청에 제출(令 제11조)**

▶▶ **② (도로공사 유형) 공사 및 유지 · 관리 대상을 가로등·신호기, 도로표지·노면표지, 차도구분 경계석, 도로표면의 포장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설치 · 보수로 규정(則 제9조)**

3. 주요내용

규제 신속확인[令 제12조, 則 제10조]

法 **제14조(규제 신속확인)**

- (주요내용)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규제 법령의 적용여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 가능(30일 이내)
- (위임사항) ①규제확인 신청방법 및 ②규제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 **① (규제확인 신청) 신청자는 연구·시범운행 계획서,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令 제12조 1항)**

▶▶ **② (규제확인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 송부(令 제12조 2항)**

-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令 제12조 3항)

3. 주요내용

위원회의 구성(令 제13조, 則 제11조)

法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주요내용) 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정책 및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본정책, 지구 지정·변경,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운영평가, 갈등조정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 정부위원(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국토부장관이 위촉)
- (위임사항) ①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② 시범운행지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부령에 위임

▶▶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2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간 연계, 자금지원, 지구 운영 결과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令 제13조 1항)**

▶▶ **② (위원회 구성)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의 차관(급) 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지정(令 제13조 2항)하고,**
-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사무국*을 둘 수 있음(令 제13조 3~6항)
*** 자동차관리관이 실무위원장이 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실무위원회 간사로 규정(則 제11조)**

3. 주요내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평가(令 제14조)

法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정기 · 수시 평가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위임사항) 평가기준 ·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① (평가절차) 시 · 도지사는 운영성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다음연도 1.31까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180일 이내)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令 제14조 1항, 3~5항)**

▶▶ **② (평가기준) 계획의 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자율주행차 도입 · 확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令 제14조 2항)**

3. 주요내용

보험가입의무(令 제15조)

法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 (주요내용)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필요
- (위임사항) ①책임보험의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
  ②보험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① (책임보험 금액) 연구 · 시범운행자의 보험가입 증명사실 제출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금액* 등 규정(令 제15조 3항)**

1.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 국토교통부장관의 보험료 지원 근거 규정(令 제15조 5항)

3. 주요내용

▶▶ ② (보험금 지급규정)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지급기준 규정*(令 제15조 4항)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사망 + 부상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부상 + 후유발생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총 받는 금액 : 후유발생*(실제/기대) + 사망 금액)

3. 주요내용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특칙(令 제16조)

法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익명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적용 배제
- (위임사항)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에 준하는 정보로서 특례를 받아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

▶▶ **① (특례대상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추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3. 주요내용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구축(令 제17조)

法 제21조(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위임사항)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① (지능형교통체계 연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수립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 안전 등을 고려하고,

* 통합교통체계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상 · 해상 · 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 안전구간 · 시범운행지구에서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행 노력(令 제17조)

*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

3. 주요내용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令 제18조, 則 제12조)

法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 (주요내용) ①정밀도로지도 구축 · 갱신 · 무상제공 근거 규정
  ②노선변경 등 지도갱신 상황 발생 시 도로관리청의 통보 의무 규정
- (위임사항) ①정밀도로지도 구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②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도갱신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및 방법은 대통령령과 부령에 위임

▶▶ ①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도 구축 시 안전구간 ·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令 제18조 1항)

▶▶ ② (정밀도로지도 갱신) 도로와 그 부속물(표지 · 신호기 ·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설치 ·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국토부장관에게 통보(令 제18조 2~3항)

* 통보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고,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근거도 규정(則 제12조)

3. 주요내용

전문인력의 양성(令 제21조, 則 제13조)

法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 (주요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소 · 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위임사항) ①지정대상은 대통령령에 지정기준은 부령에 위임
  ②전문인력 양성기관 예산 및 경비지원 근거는 대통령령에 위임

▶▶ **① (지정대상 . 기준) 法 제24조 2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대상으로 규정(令 제21조 1항), 교육 과정, 시설, 교수요원, 경비조달 방안 등을 고려사항으로 규정(則 제13조)**

▶▶ **② (예산지원 경비항목)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사료 · 수당, 기자재 등 교육시설, 장소 임대비용 등에 예산지원 가능(令 제21조 2항)**

3. 주요내용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令 제19조)

法 **제23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을 위해 지자체. 기관·사업자 등에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위임사항) 지원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① (지원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令 제19조)**

3. 주요내용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 국제협력 수행기관(令 제20조)

法 제24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 (주요내용) 자율주행차 안전, 인프라, 교통물류체계 등 관련 기술개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규정
- (위임사항) 법에서 정한 기관 外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은 대통령령에 위임

法 제26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 (주요내용) 해외시장 친출을 위한 기술·인력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지원 근거 규정
- (위임사항) 사업 수행기관은 대통령령에 위임

▶▶ **① (사업 수행기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을 추가 규정*하고(令 제20조), 해외진출 · 국제협력 기관을 法 제24조 2항의 기관**으로 규정(令 제2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및 令 제20조에서 규정한 기관**

4. 향후 계획(안)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19.1~3월)

- 법제처심사('20.3월), 차관회의 · 국무회의('20.4월) 및 공포 · 시행('20.5.1)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제2조(자율주행협력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는 것은 도로교통정보, 정밀도로지도 정보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주변상황이나 도로정보 등을 인지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말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지속적인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		한다. **제3조(정밀도로지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란 지형 정보, 교통시설 정보 그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한 전자적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을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2.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이전·사업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의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2. 기본계획 추진 재원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및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게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현황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현황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해외 기술·산업·정책 동향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을 포함하는 도로구조 가. 차로 수 나. 차로의 폭 다. 차로 표시 라.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마. 평면곡선의 길이 바.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및 그 변화도 사. 평면곡선부의 확폭 2.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등의 도로요건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 현황 4.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한 경우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서면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2.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고지 가. 기점 및 종점의 자율주행 안전구간에 관한 도로표지의 게시 나.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의한 고지 다.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한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3.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고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한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 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한 경우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시범운행지구에 필요한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4. 연구·시범운행의 안전성 확보 방안 5. 주민의견의 수렴과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과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에 포함될 구체적 사항 및 세부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과 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①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5조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최초 지정 당시 노선의 연장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3.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5.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 추진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2년 이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5조제7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5조제7항제1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지방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법의 목적과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와 부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 4.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5. 자율주행자동차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3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하는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서 중 하나(이하 “자동차등록증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하는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	**제6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3.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2.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3.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4. 운행구역 및 운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⑤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합의를 거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	③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정운수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3.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2.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3.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4.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5. 운임 6.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정하는 사항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하는 허가의 기간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	**제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2.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2.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3.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臺數) 4. 운행구역 및 운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확인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승인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취소를 감수할 것 3.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	**제8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이란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내에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또는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적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 계획서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 명령에 따를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자에게 그 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 사업계획서 나. 설계도서 2. 도로의 유지·관리 가.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도로계획평면도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및 신호기의 설치·보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2.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설치·보수 3.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보수 4. 도로표면의 포장 5.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보수 ②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제 신속확인)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운행과 관련한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	**제10조(규제 신속확인)**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규제확인 신청서 2.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계획서 3.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4.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시범운행하기 위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규제 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와 같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사이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3. 법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토교통부 4. 경찰청	
⑤ 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도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제11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①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의 자동차관리관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 제13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둔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한다. 1.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달성도 2.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는 자와 법 제19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는 자(이하 “책임보험가입자”라 한다)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당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3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으려는 자: 허가 또는 면허의 신청일 전일까지 2. 법 제19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려는 자: 연구·시범운행일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허가 또는 면허,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③ 책임보험가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검토·정비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갱신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및 변경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그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는 매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운영 사업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교육장소 임대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 5. 자율주행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 자율주행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26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6421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MEMO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